기술이전 업무처리규칙

제정 2009. 7.27.

개정 2009. 12. 31.

개정 2015. 12. 17.

개정 2017. 12. 29.

개정 2020. 03. 17.

개정 2021. 12. 02.

개정 2023. 09.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52조(계약의 원칙과 방법)에 의한 연구에 관한 재계약 사항 중 진흥원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결과, 또는 수행 중에 얻어진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Know-How) 등을 제3자에게 전수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기술이전 계약업무에 관하여는 진흥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협약, 진흥원 규정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술이전"이라 함은 연구개발로 취득한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기술의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
- 2. "기술전수계약"이라 함은 진흥원이 연구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교육지도 또는 현장지도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 3. "기술사용계약"이라 함은 진흥원이 연구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또는 설명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 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5. "과제실시책임자"라 함은 일반회계사업인 경우 해당과제를 수행하는 팀장,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 6. "과제관리부서"라 함은 기술전수(사용)에 필요한 관련자료 접수 및 공모,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7. "과제실시부서"라 함은 기술전수(사용)대상이 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부서로 기술전수(사용)와 관련된 기술문서 작성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5.12.17>

- 8.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5.12.17>
- 9.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5.12.17>
-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5.12.17.>
- 11. "순수연구비"라 함은 기술개발사업예산(정부출연금)에서 간접비를 제외한 실제 기술개발에 투입된 직접연구비를 말한다.<신설 2017.12.29.>

제2장 기술전수(사용) 과제 선정 및 공고

- 제4조(과제선정 의뢰) 연구개발 결과물을 기술이전하기 위해서 진흥원 과제실시책임자는 연구사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시 기술이전이 가능한 연구결과에 대한 [별지 제1호] 기술전수(사용)계획서와 기투입 연구비, 연구원의 참여율 및 기술료 산정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제관리부서에 기술전수(사용)과제의 선정을 의뢰한다. <개정 2015.12.17>
- 제5조(과제선정) ①과제관리부서는 과제실시책임자로부터 기술전수(사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접수받고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12.17>
 - ②과제관리부서는 기술전수(사용) 내용, 범위 및 추진방법, 기술료 등 기술전수(사용)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전수(사용) 대상 과제를 선정 한다. <개정 2015.12.17.>
- 제6조(공고) ①과제관리부서는 기술전수(사용) 과제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설명회 개최시기, 장소, 참여자격 및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일간지나 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한다.<개정 2015.12.17>
 - ②지속적인 기술전수(사용) 신청을 위하여,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기술전수(사용) 공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고 시, 기술전수(사용) 대상 과제 설명 및 과제 담당자 정보를 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7>

제3장 기술이전 설명회 및 기업 선정, 계약체결

- 제7조(설명회 개최) 과제관리부서는 과제실시책임자와 공동으로 관련기업(이하 '신청자' 라 한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전대상 기술 및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제8조(기술이전 신청서 접수 및 선정)①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2호] 기술전수(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신청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기술료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 ③기술이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 1. 기술전수(사용)의 경우 희망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17>
 - 2. 기술전수(사용)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진흥원은 각 신청자 별 [별지 제3호] 기술전수 신청자 평가표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자에 대한 기술전수(사용)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 3.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기술이전 희망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거나, 기술의 특성상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계약체결)** ①과제관리부서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이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기술이전 계약형태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진흥원과 기술이전 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계약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 1. 기술사용계약 : 기술이전 대상자가 영리기관의 경우 실시하며, 대상 기술의 소스코드, 관련 기술문서만 제공하며, 별도의 인력지원 및 전수 교육이 없는 형태의 계약으로 기술에 대한 사용권만 제공한다.
 - 2. 기술전수계약: 기술이전 대상자가 영리기관의 경우 실시하며, 대상 기술의 소스코드, 관련 기술문서 제공 및 기술 전수교육, 기술 설치 지원 등 기술 사용권과 더불어 기술 지원을 포함한 형태의 계약으로 별도의 기술전수 지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3. 기술공급계약 : 기술이전 대상자가 비영리기관의 경우 실시하며, 기술전수계약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사용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기술료 방식을 [별지 제4호] 기술전수(사용)계약서에 명시한다.<개정 2015.12.17.><개정 2021.12.02.>

제4장 기술료 산정 방법

- 제10조(기술료 구분) ①기술료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하며 기술이전 대상자는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한다.
 - ②기술료 산정시, 간접비를 포한한 총 출연금 중 기술전수(사용) 대상 기술에 투입된 순수연구비를 기준으로 한다.
 - ③정액기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기술계약체결시, 고정된 기술료를 징수하며 추후 발생된 매출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 2. 기술계약 대상자의 기업형태에 따라 기술료를 구분하며 대기업의 경우 순수연구비의 40%, 중견기업의 경우 순수연구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순수연구비의 10%로 산정하다.
 - 3. 기술전수(사용) 대상 기술이 원천기술인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의 질적 가치 및 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액기술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정액기술료를 초과할 수 없다.
 - ④경상기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기술계약체결시, 기술에 대한 착수기본료를 징수하며 추후 발생된 매출에 따른 매출정률기술료를 징수한다.
 - 2.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 : 기술계약 대상자의 기업형태에 따라 기술료를 구분하며 대기업의 경우 순수연구비의 4%, 중견기업의 경우 순수연구비의 2%, 중소기업의 경우 순수연구비의 1%를 착수기본료로 산정한다.
 - 3. 매출정률기술료(Running Royalty)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기업의 경우 4%, 중견기업의 경우 2%, 중소기업의 경우 1%를 매출정률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17.><개정 2017.12.29.>
- 제11조(기술료 정수 조정사항) ①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과 기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술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1/3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03.17>
 - ②기술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제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조정할 수 있다.
 - 1. 신청자가 학교,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매출정률기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 2. 비영리기관이 진흥원과 [별지 제5호] 기술교류약정서에 의한 별도의 약정을 기체결하였을 경우, 경상기술료의 착수기본료 및 매출정률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02.>

- 3. 진흥원은 비영리기관과 기술전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5호] 기술교류약정서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제13조에 의한 기술전수지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02.>
- 4. 기타 기술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과제관리부서는 동일 기술에 대하여 재차 기술을 전수(사용)하게 되는 경우 기계약체결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을 감안하여 개발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술에 대해 [별지 제6호]의 감액기준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7><개정 2017.12.29> <개정 2021.12.02.>
- 제12조(기술실시권 기간) 기술이전 대상자가 매출정률기술료를 적용 받을 경우 기술이전 실시권 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납입한 기술료가 기투입된 연구비의 100%에 미달될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실시권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전수 지도비용

- 제13조(기술전수 지도비용) ①진흥원은 기술전수계약을 체결한 기술전수 대상자에게 교육지도 또는 현장지도 등에 소요되는 기술전수 지도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 ②과제실시책임자는 기술전수 지도비용을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출하여 기술전수 계약체결시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건비 : 당해 기술전수에 투입되는 인력의 월급여 총액을 산출하고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2. 간접비 : 인건비 총액의 80%를 계상한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3. 순수연구비 : 당해 연도 진흥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되 기술전수 특성에 따라 별도비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전수 지도비용을 증감할 수 있다.
- 제14조(기술전수 지도비용 징수방법) ①진흥원은 기술전수 대상자로부터 선급금으로 기술전수 지도비용의 50%를, 기술전수 지도기간 중간 시점에서 잔금으로 50%를 각각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기술전수 지도비용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징수할 수 있으며, 1억원 이상이거나 그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기술이전 사후관리

- 제15조(후속조치) ①과제관리부서는 기술전수 대상자로부터 납입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및 기술전수 지도비 등에 대하여 회계담당에 수입의뢰를 하고 회계담당은 계산서를 발행하다.<개정 2015.12.17>
 - ②과제관리부서는 기술이전 계약체결 내역을 과제실시책임자에게 통보한다.
 - ③계약체결 사항이 기술전수계약인 경우 과제수행책임자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등을 포함한 [별지 제7호] 기술전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사본을 과제관리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5.12.17> <개정 2021.12.02.>
 - ④계약체결 사항이 기술사용계약인 경우 과제실시책임자는 대상 기술의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 제공 등 기술이전에 관한 내역을 과제관리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5.12.17>
- 제16조(상용화 실태조사) ①과제관리부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과제실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계약자가 이전 받은 기술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기간 동안 계약자의 상용화 추진실적, 상용화 미추진 사유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 ②진흥원은 매출정률기술료(Running Royalty)를 적용 받는 대상자로부터 실시기간 동안 매결산 확정일 익월말까지 매출액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 제17조(기술이전 참여업체 평가) 과제관리부서는 필요시 과제실시책임자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참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기술이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신규 공동연구과제 수행 및 기술이전 참여기업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기술공급

- 제18조(비영리기관 계약체결) ①학교,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진흥원과 기술전수(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8호] 기술공급계약서에 의한 기술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1.12.02.>
 - ②비영리기관은 제11조 2항에 따라 기술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제8장 기술료 배분 및 관리

- **제19조(기술료 배분 기준)** 참여연구원 및 기여자의 성과금 지급 기준은 [별지 제9호]의 기술료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5.12.17.><개정 2017.12.29.><개정 2021.12.02.>
- 제20조(참여연구원 성과금 분배 기준) ①참여연구원의 성과금 분배를 위해 평가자(과제실시책임자, 직상위자)는 [별지 제10호]에 따라 '개인별 공헌도'를 평가한다.
 - 단, 직상위자가 과제실시책임자인 경우, 차상위자가 평가한다.<개정 2021.12.02.>
- ②기술료 산정 시 이전년도 기술이 기술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참여연구원의 참여비율은 [별지 제10호]에 따라 정하며, 이전년도 기술 포함여부는 과제실시책임자가 기술특성에 따라 결정한다. 단, 단장, 본부장 등 차상위 보직자의 경우 성과금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12.17.><개정 2020.03.17.>
- 제21조(기여자 대상) ① "기여자"라 함은 기술이전 및 기술확산에 기여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기술실시 계약 체결 및 그 전후 과정에서 R&D 계약관리, R&D 기술검증, R&D 사업기획·관리에 기여한 자(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제외)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과제 관리 부서에 소속된 자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해당 기술이전에 통상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노력이 있는 자
 <개정 2021.12.02.>
 - 2.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사업기획·관리, 기술검증 참여, 시장성평가, 가치평가,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개정 2021.12.02.>
 - 3.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
 - 4.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경상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5.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적발하거나 기술적·법적 지원을 통해 권리확보에 기여한 자
 - 6. 연구개발결과물과 관련한 심판·소송·중재 등 법률적 대응을 통한 기술료 징수에 기여한 자
 - 7. 과제관리부서에서 기술이전 업무를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 8. 기타 과제실시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기여자로 인정하는 자
 - 9.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를 통해 성과 배분을 받은 자는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자에서 제외<개정 2021.12.02.>
 - 10. 주관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타 기관에 속한 자는 기관의 기여대상자에서 제외 ※ 타 기관에 속한 자는 별도로 체결된 중개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

제21조의2(기술이전 기여자 기여도 평가 및 성과금 산정) 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특정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이전 기여자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1.12.02.>

- 1. 과제관리부서 본부장 1인
- 2. 감사팀장 1인
- 3. 과제실시부서 팀장 1인
- 4. 특정 기술이전의 대상이 된 연구의 과제실시책임자 1인
- 5. 외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문가 1인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제관리부서 본부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평가위원회를 소집 및 운영하며, 과제실시부서의 팀장은 간사로서 평가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12.02.>
-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신설 2021.12.02.>
 - 1. 기술이전 기여자가 기여도 평가를 위해 제출한 [별지 제11호] 기여자 실적 조서 양식을 바탕으로 기여도 평가
 - 2. 기여도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별지 제13호]를 통해 기여등급과 기여자 성과금 산정

제22조(평가결과 이의신청) ① 기술이전 참여연구원과 기여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과제실시책임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과제실시책임자는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담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양식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5.12.17>

제23조(기술료 지급 시기) ① 기술료 지급은 매년 상하반기별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17.>

부 칙<2009. 7. 2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지침의 폐지) 기술이전 계약업무처리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2017. 12. 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자 성과금 적용례) 별지 제8호 기술료 배분 기준 내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배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하다.

부 칙<2021. 12. 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연구원 성과금 분배 기준 적용례) 별지 제10호 참여연구원 성과금 지급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여자 대상 및 평가기준 적용례) 별지 제13호 기여자 성과금 지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09. 2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개정 2015.12.17><개정 2021.12.02>

기술전수(사용)계획서

1. 기술이전 개요

이전기술명			
사업구분(재원)			
제 안 부 서			
기술이전구분	기술전수, 기술사용, 기타 ()	

2. 관련 연구개발 사업

과 제 명	
과제관리책임자 (소속/직위)	
총 연 구 기 간	
총연 구 비	
당해연도 연구비	

3. 기술이전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 기술이전의 목적

O

_

나. 기대성과

0

다. 활용방안

O

4. 기술이전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술이전의 내용

O

나. 기술이전의 범위(전체 시스템 구성과 이전기술과의 관계를 명확히 기술)

O

다. 기술이전시 제공되는 기술문서

구분	문서명	주요 작성자

라. 기술이전시 제공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유의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출원/등록 현황]

구분 (등록/출원)	명칭	발명자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국가
(등록/출원)	ㅎ싱 	성명	소속	번호	일자	'
특허 (출원)						
특허 (출원)						

[논문 게재 현황]

구분 (국내/국외)	논문명	저자		학회명/저널명	게재년월일	SCI 여부
(국내/국외)	七七岁	성명	소속] 역외당/시달당 	기세선펄달	여부
국외						
국내						

[소프트웨어 등록 현황]

구분 명칭		발명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국가
一丁七	- ত - স	성명	소속	궁숙번오	중국 할사	4/1
SW 등록						
SW 등록						

5. 기술이전의 추진 방법 및 일정계획(기술문서제공, 기술교육, 기술지원 등)

추진방법	세부추진방법	주관부서	일정

6. 기술전수에 참여할 인력현황 및 소요예산

가. 인력현황

구분	성명	소속/직위	참여율(%)	업무내용

나. 소요예산(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

(단위: 천원)

비목(세세목)	소요비용	비고

7. 기술성

가. 기술수준

질적수준(핵심기술내용 비교)	최고수준과의 기술격차	동 기술수준을 보유한 국가/기관

나. 기술의 독창성 및 연계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독창성, 응용성, 장점의 내용 등)
독창적인 신기술	
기존기술의 개량/응용	
기존기술의 융합	

다. 기술의 경쟁력

구분	구체적인 내용(과학적/기술적 원리 및 응용과정과 관련된 내용)
기존(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	
기존(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	
유사기술의 특허 및 연구결과에 대한 조사내용	

8. 상용화 관련사항

구분	구체적인 내용
상용화의 애로점과 극복(개선)방안	
제품/서비스의 예상 수요자(층)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 내용	

9. 기술전수(사용) 계약서 이외에 특수계약 조건 요구사항 기입 (별지 사용가능)

0

-

- 10. 기술이전 업체선정에 대한 의견제시(별지 사용가능)
- 11. 기타 기술전수(사용)시 필요한 의견제시(현재의 여건을 토대로 인력, 장비, 예산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사용가능)
- 12. 본 기술개발에 실 투입된 연구비의 연도별 내역

(단위 : 천원)

년도	,	사업 투입예신	ŀ	이전대상 기술 투입예산				
연구비	년	년	합계	년	년	합계		
정부출연금								
투입 순수연구비								

13. 본 기술개발에 참여한 직원 및 참여율 내역

순번	2 1 124	7] 7	ਬ ਹੀ ਜੀ		연차별 참여기간		총 참여
	성명	직급	부서명	1차년도 참여기간(개월)	2차년도 참여기간(개월)	N차년도 참여기간(개월)	반영비율(%)
1							
2							
3							
4							
5							

기술전수(사용)신청서

기술의 기술전수(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업체명 ^(주1)										
	대표자 성명 ^(주1)	한 글 : 한 자 :				대 표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번호(주1)				업체규모 중			중소(벤처 포함), 대			
신청	사업의 종류 ^(취)	업태				종목	•				
업체 개요	시업장 주소										
\ll\\\\\\\\\\\\\\\\\\\\\\\\\\\\\\\\\\	홈페이지 URL	https://									
	구분(주2)	자산총의 (백만원)]자본 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영업· (백민		종업원수 (명)	-	수 <u>출</u> 액 (천불)
	년										
	년										
	년										
	연구개발조직										
	연구인력	총 명	(박사	명, 석	사	명, 대	개졸	명,	고졸	명))
	주요연구 시설						연구		1		
연구	(보유현황)					총예	산	۲.	1		
개발 현황	산업재산권 현황	특허	건, 실용신역	안	건,	프로그램	등록	7	넌, 기타		
	선 그 네 베	개발과	제내용	7]	비빌	·기간		소요자금			·업화현황
	연구개발 실적										
	E 1										
실무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주	-소	:(사업장	주소와	동일	시 미기입])	
인적											
사항	전화번호 ()	-	FAX		()	-		E-mail		
구비 서류	1. 상용화계획(안) <별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회사현황 및 연구개발 홍보 자료(자유양식) ※ 2, 3항은 FAX/우편/E-mail 송부 또는 계약체결시 인편 제출										

- (주1) 사업자등록증 상 명기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함
- (주2) 최근 3년간 해당사항을 작성함

<별첨>

이전기술 상용화계획(안)

o 업체명 :

이전 기술 상용화 전략				
상용화	추진 일정	※ 시제품 제작일, 제품성	맹산일 및 판매개시일 등을 사전 예	측하여 작성
	인력 수급			
추진 계획	자금 조달			
	설비 투자			
예상	 판대	개개시 1차년도	판매개시 2차년도	판매개시 3차년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상용화전략은 업체만의 차별화 개발전략 또는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전략을 위주로 작성함** 각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가능함

[별지 제3호]<개정 2015.12.17>

기술전수 신청자 평가표

o 이전기술명 :

o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

구 분		평 가 지 표	가중치		등 B	С	ដ D	
기 술 인 력	기술인력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전문대졸 이상)의 수	4	5	4	3	2	1
	기술인력비	전체 종업원 수에 대한 기술인력 비율의 적정성	3	5	4	3	2	1
	기술인력 경 력	5	5	4	3	2	1	
기 술 관 리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등록 등 정도	3	5	4	3	2	1
	기술개발 능 력	이전기술과 관련된 생산제품의 기술보유, 기술혁신을 위한 능력 및 활동 정도	5	5	4	3	2	1

총 점 /100 년 월 일 평가자: (인)

※ 각 소항목별의 점수란에 해당등급을 ○표하고 이 ○표된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후 모두 합하여 100점 만점 중의 득점을 산출하여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기술전수(사용) 계약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개 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술전수 (사용) 지도 및 비독점 실시권을 허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은 기술전수 계약 과 기술사용 계약 중 기술() 계약(이하 "본 계약")으로 체결한다.

-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기술과 관련한 기술전수(사용)지도 및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술실시 내용)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
 - ② "갑"은 별첨 기술전수계획의 범위 안에서 "을"이 실시권을 실시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 ③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는 "갑"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당해 기술에 한한다.
 - ④ "갑"은 제2항의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를 기술문서로 제공하거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서 "을"에게 제공한다.
 - ⑤ "갑"의 "을"에 대한 기술실시권의 허여 후에도 "갑"은 제3자에게 다시 기술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발효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은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갑"에게 통보하고 계약 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을"은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4조(기술료 형태 선정) ① 기술료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기술료 방식으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다.
 - ② 정액기술료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조 1항에 따라 "을"은 "갑"에게 기술료를 지급한다.

- ③ 경상기술료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조 2항에 따라 "을"은 "갑"에게 기술료를 지급한다.
- 제5조(기술료 지급) ①정액기술료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을"은 정액기술료로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②경상기술료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와 매출정률기술료로 구성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 1. "을"은 착수기본료로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2. "을"은 매출정률기술료로 국외 판매수입의 ()%를, 국내 판매수입의 ()%를 각각 "갑"에게 지급한다.
- 제6조(기술료 지급방법) ① "을"은 제5조 1항의 정액기술료 또는 제5조 2항 1호의 착수기본료를 본 계약체결시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5조 2항 2호의 매출정률기술료를 판매개시일로부터 실시기간 종료일까지 매결산기 결산 확정일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전 1항과 2항의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연체지급전일까지 5%의 금리를 적용하되, 적용금리가 5% 미만인 경우 주거래은행 지점장 확인서를 첨부한다.
- 제7조(기술개량) ① "을"이 새로운 창의성을 추가하여 본 기술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개량된 기술에 대한 소유는 "갑"과 공동소유로 한다.
 - ② "갑"과 "을"이 본 기술의 개량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을"은 독자기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8조(기술전수 지도기간) 본 계약이 기술전수계약일 경우, 기술전수 지도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의 기술전수 수용능력에 따라 기술전수 지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기술 지도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기술전수지도 범위) 본 계약이 기술전수계약일 경우, 본 기술전수 지도의 범위는 연구개발 결과 물의 설치, 시범 테스트 운용 지원 및 질의응답 등 "을"이 계약한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필요사항들을 범위로 한다.
- 제10조(기술전수 지도비용 및 지급) 본 계약이 기술전수계약의 경우, 아래 각 항을 따른다.
 - ①"을"은 계약체결시 기술전수 지도비용으로 금()원 (\)을 현금으로 "갑"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비용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년도별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의 범위는 "갑"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되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③"갑"은 기술전수 지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전수지도비 중 순수연구비에 대한 정산

서를 "을"에게 송부하고 "갑"과 "을"은 정산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분에 대하여 상호 납입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 제11조(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교체) 본 계약이 기술전수계약일 경우, "갑"은 "을"에게 기술전수 지도기간 중 필요에 따라 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판매수입 계산기준) 본 계약이 기술전수계약의 경우, 아래 각 항을 따른다.
 - ① 제5조 2항의 판매수입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명세서로써도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②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타 주요부품 또는 타 단위 제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시장 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 제13조(판매수입 증빙자료 제출) 본 계약이 기술전수계약의 경우, 아래 각 항을 따른다.
 - ① "을"은 매결산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년간 판매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1부를 "갑"에게 제출한다.
 -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판매수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판매수입계산 조사) 본 계약이 기술전수계약의 경우, 아래 각 항을 따른다.
 - ① "갑"은 "을"이 제출한 판매수입 증빙서류가 제12조의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조사하고 판매수입을 결정하여 제13조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갑"이 위촉한 공인회계사는 제12조의 판매수입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 근무시간 중에 "을"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공인회계사 위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제1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을 통하여 "갑"의 "을"에 대한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한다.
- 제16조(비밀보장)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 ② "갑"과 "을"은 각자 자신에게 소속된 관련자들로 하여금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제3자

- 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후 5년 간 계속된다.
- 제17조(권리의무 승계제한 등)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갑"으로부터 허여 받은 "기술" 에 대한 실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허여할 수 없다.
 - ② "을"이 "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발명 등의 형식에 의하여 이를 다른 기술에 적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명칭사용 제한)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이나 쟁송 상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계약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 6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을"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술료 지급 및 지급방법을 "갑"과 사전협의없이 지연하는 경우 나. "을"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②"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가. "을"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나. "을"이 채권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전면 양도하거나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 가는 경우
 - ③제1항,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이 제5조에 의해 징수한 기술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출정률기술료는 해지시까지의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④제3항 단서의 경우 "갑"은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이정산서에 의해 30일 이내에 "갑"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제3자를 재선정할 수 있으며 재선정된 자 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시까지 취득한 제 반자료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⑦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갑"과 "을"은 제16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한 기술 료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계약발효일 후 "을"의 기술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부진 등에 대하여는 "갑"은 "을"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한 기술료를 환급 받을 수 없다.
- 제21조(회사변경 통보) "을"은 본 계약 체결이후 "을"의 명칭,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갑"에게 통보한다.
- 제22조(계약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제24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 제25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협의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을 배타적, 전속적 관할로 하여 이를 해결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원 장 (인)

"을" 주 소:

대 표 이 사 (인)

[별지 제5호]<개정 2015.12.17><개정 2021.12.02.>

기술교류약정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ㅇ	하 "을"이라 한다)는
국가의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신 기술개발 보유기술에 디	대하여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쌍방은

- 1.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 가. 연구개발에 상대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 개발보유 기술의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 다. 정보보호 관련분야의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 2.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 가. 정보보호 사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관한 발간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나. 기타 필요한 협조사항을 서로 호혜적으로 처리한다.
 - 다. 상기의 기술교류는 기술내용의 특성에 따라 사안발생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약정서는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그 유효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되, 만료일 15일 이전까지 기술교류약정서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연장 시점으로부터 2년간 그 효력이 연장되며, 연장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

20 년 월 일

"갑" "을"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원 장 (인)

[별지 제6호] <신설 2017.12.29><개정 2021.12.02.>

기술개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기술 감면 기준

가. 감액 대상 및 기준

o 1차 감액: 개발사업 종료 후 2년 ~ 5년 기술인 경우 기본 기술료의 1/2 감액

o 2차 감액: 개발사업 종료 후 5년 이상인 경우 1차 감액에서 1/2 추가 감액

나. 감액 요율

구분		기시 이렇게 뭐무 기세	종료경과기간에 따른 감액					
		기업 유형에 따른 감액 (기본기술료)	2년 ~ 5년 (감액요율 50%)	5년 이상 (추가감액요율 50%)				
	대기업	- (감액 없음)	대기업 기준 1/2 감액 (50% 수준)	대기업 기준 1/4 감액 (75% 수준)				
감액율 (실질 감액율)	중견 기업	대기업 기준 1/2 감액 (50% 수준)	중견기업 기준 1/2 감액 (75% 수준)	중견기업 기준 1/4 감액 (87.5% 수준)				
	중소 대기업 기준 1/4 감액 기업 (75% 수준)		중소기업 기준 1/2 감액 (87.5% 수준)	중소기업 기준 1/4 감액 (93.75% 수준)				

※ 기본 기술료는 해당 노후 기술이 사업 종료년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한 "기술이전 전수 계획서"의 기술료 지급 방식과 산정 기준을 따른다.

다. 제공범위 제한

o 특허사용권(실시권), 소프트웨어(소스코드), 기술문서(설계서)는 기본으로 제공하되, 이전 교육 및 유지보수는 미 제공

[별지 제7호]<개정 2009. 12. 31><개정 2021.12.02.>

	담	당	팀 장	단 장	본부(실)장	원	장
<u>기술전수결과보고서</u>							
이 전 기 술 명							
기술이전 대상기관							
기술전수 지도기간							
기술전수 부서 /참여인원							
기술전수내용(기술사용 허여내용)							
제공된 자료							
, 6 2 , -							
보고서명세(Spec.)							
작성여부							

첨 부 : 기술전수교육일지 1부.

기술전수교육일지

확인자 :			(인)
	년	월	일

가. 전수내용

교 육 항 목	교 육 내 용	시 간	강 사	비고

Ľ	. 실습 및 특기사항	

[별지 제8호]<개정 2015.12.17><개정 2021.12.02.>

기술공급계약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하 "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사용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기술사용기간) 본 기술의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또는 연구완료시까지)까지로 한다.

제3조(기술사용 범위) ①"을"이 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의 범위는 "을"의 연구수행 목적에 국한한다.

②"을"이 동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허여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기술 개작) "을"이 새로운 창의성을 추가하여 본 기술을 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해지)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갑"은 60일간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을"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을"로부터 징수 받은 금액은 반납하지 아니한다.
- 제6조(기술료 구성 및 지급) ①"을"은 "갑"과 별도의 기술교류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본 기술사용료 중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를 지급하여하며, 별도의 기술교류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본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② "을"이 "갑"과 별도의 기술교류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을"은 착수기본료로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③ "을"이 "갑"과 별도의 기술교류약정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기술공급에 따른 실비의 부대비용 및 기술전수지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금()원(\)을 본 계약체결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제8조(기타) 전 제6조의 기술료는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을"이 개발한 기술을 "갑"이 상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첨 부: 기술공급계획서 1부 끝

20 . . .

"감"

"을"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원 장 (인)

기술공급계획서

1.	공급의 목적
2.	공급의 내용 및 범위
3.	공급의 추진방법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	공급되는 기술(구체적 명기) :
6.	연구원 편성표
7.	소요예산
*	상기 항목의 작성방법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적의 조정가능

[별지 제9호]<신설 2015.12.17.><개정 2017.12.29., 2021.12.2., 2023.09.27.> 기술료 배분 기준

배분 분류	배분율(%)	내용	비고
참여연구원 보상금	50% 이상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15%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비용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기여자 보상금	10% 이상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성과금	제 41조(기술 료 사용)
기타	차액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 기술개발 재투자 비용은 신규과제 기획(자료조사,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별지 제10호]<신설 2015.12.17> <개정 2021.12.02.>

참여연구원 성과금 지급기준

			(가)	(나)		(다) 개인	별 공헌도	
성명	직급	부서명	기술이전 공헌도 최종비율(%)	* 참여 반영비율(%)	지적재산권 실적 (60%)	시스템 설계 공헌도 (15%)	기술전수 참여도 (10%)	대내외 업무 공헌도 (15%)
홍길동								

가. 기술이전 공헌도 최종비율

기술이전 공헌도 최종비율 = $\frac{$ 총참여 반영비율 \times 개인별 공헌도 $\frac{}{\sum}$ (총참여 반영비율 \times 개인별 공헌도)

나. 총 참여 반영비율

				연차별 참여기간	총 참여	
성명	직급	부서명	1차년도 참여기간(개월)	2차년도 참여기간(개월)	N차년도 참여기간(개월)	반영비율(%)
홍길동						

총 참여 반영비율 = \sum (연차별 참여기간 \times 연차별 참여 반영비율)

<연차별 참여 반영비율>

이전 기술 개발연차	연차별 참여 반영비율(%)						
이신 기술 개월인자	D-0Year	D-1Year	D-2Year	D-3Year	D-4Year		
1차년도	100%	_	_	_	_		
2차년도	60%	40%	_	_	_		
3차년도	60%	30%	10%	-	_		
4차년도	50%	30%	10%	10%	_		
5차년도	50%	20%	10%	10%	10%		

- ※ 이전 개발기술(선행개발기술) 포함여부는 과제실시책임자가 기술특성에 따라 결정
- ※ 이전 기술 개발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과제실시책임자가 연차별 참여 반영비율 결정

다. 개인별 공헌도

지적재산권실적+시스템설계공헌도+기술전수참여도+대내외업무공헌도

1. 지적재산권 실적

※ 정량평가 항목으로 지적재산권 실적 건별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합으로 60점 만점으로 함

 \sum (지적재산권실적가중치imes실적건별기여율(%))

<지적재산권 실적 가중치>

특허	국제- 출원	3	국제-등록	4
국어	국내- 출원	2	국내-등록	3
논문	1등급 (SCIE급 이상)	7	2등급 (국제저널)	5
근단	3등급(국제학술, 국내저널)	3	4등급 (국내학술)	1
소프트웨어 등록	저작권등록	1		

※ 참여연구원의 실적 건별 기여율은 과제실시책임자가 정한다.

2. 시스템 설계 공헌도

※ 정성평가 항목으로 과제실시책임자가 평가하며 15점 만점으로 부여함 단, 과제실시책임자는 직상위자가 평가한다.

3. 기술전수 참여도

※ 정성평가 항목으로 과제실시책임자가 평가하며 10점 만점으로 부여함 단, 과제실시책임자는 직상위자가 평가한다.

4. 대내외 업무 공헌도

※ 정성평가 항목으로 참여연구원의 소속 직상위자가 평가하며 15점 만점으로 부여함 단, 직상위자가 과제실시책임자인 경우, 차상위자가 평가한다.

기여자 실적 조서 양식

기술이전 기여자 실적 조서

	소 속		본두	₫ /	단 /	팀.
인적 사항	직 위		기여구분	(계약관리/기술	검증/사업기	획관리/기타)
7,18,	성 명		생년월일			
기술명						
기여내용	(기재란 부족시	별지 사용)				
먼서	2.					
		20			작성자 : 0	ㅇㅇ (서명)

[별지 제12호]<신설 2015.12.17><개정 2021.12.02.>

기여자 기여도평가 점수 산정표

구 분	후보명단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R&D 계약관리	홍길동					
R&D 기술검증						
R&D 시업 기확·관리						

[※]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최저점수를 제외함

[별지 제13호] <신설 2021.12.02.>

기여자 성과금 지급 기준

가. 기여자 성과금 산정 계산식

	기 너 근초 애
기여자서과극 =	/ 1 1 0 1 1 1 1 1 1 1
744345-	기성기 권케이이스 X기억등님
	기여자전체인원수 ''''

나. 기여등급

기어드그	S	Α	В	С	D
1408	180%	140%	100%	60%	20%

※ 별지 제12호에서 산정된 기여자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기여등급을 정한다.

배분율 : S등급(10%), A등급(20%), B등급(50%), C등급(20%), D등급(10%)